

1. 개정이유

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인 강원랜드는 외국인 이용객 유치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전용구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.

그 일환으로 강원랜드의 외국인 전용구역의 정의를 신설하여 내국인 출입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, 외국인 전용구역의 운영·영업방법을 강원랜드 내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이 가능한 구역을 명시(안 별표10 제2호)

- 1) 강원랜드 일반영업장과 회원용영업장에 대하여 ‘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영업소’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, 내국인 출입이 불가능한 외국인 전용구역과 구분될 수 있도록 함.

나. 외국인 전용구역의 정의를 신설하고 내국인 출입 방지 의무를 부여
(안 별표10 제2-2호)

- 1) 내국인의 외국인 전용구역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외국인만이 출입할 수 있는 구역이라는 점을 명시하고,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 내국인 출입통제 의무를 부여

다. 내규로 위임하는 내용에 외국인 전용구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(안 별표10 제11호)

- 1) 외국인 전용구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강원랜드 내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,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합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생략

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별표 10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표 제11호 중 “영업장에”를 “영업장과 외국인 전용구역에”로 한다.

2.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영업소는 회원용 영업장과 일반 영업장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, 일반 영업장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2-2. 외국인(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.)만 출입이 가능한 외국인 전용구역을 둘 수 있다. 외국인 전용구역에는 내국인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